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

정 해 권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방사성폐기물과 서기관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지난 1978년 첫 가동을 개시한 이래 그동안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준국산 에너지로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이 금년 2월 16일에 발효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가 기간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에서 가동중에 있는 19기의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의 임시 저장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각각 2008년, 2016년경에 저장 시설의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원전 이외에도 병원, 산업체 등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임시 저장 시설(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소재) 역시 2012년경이면 포화가 예상되어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9년간 수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부지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소망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관리 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한 일방적인 추진 방식과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의 불신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17일 원자력 이용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

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확정 · 발표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임시 저장 시설에 다소 여유가 있고 시설의 안전성, 처리 방침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관리 방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나,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세계적으로 오랜 운영 경험과 처분 기술의 발달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영구 처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임시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임박하여 처분 시설의 건설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분 시설 유치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는 지역 지원에 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고, 정부도 유치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체제 마련 및 지원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에 동감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유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은 크게 처분 시설의 안전성,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부지 선정 절차의 민주성 및 투명성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중 · 저준위 처분 시설의 안전성 규정

제호 및 제2조의 용어 정의에서 유치 지역 내 설치되는 시설이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임을 규정하여 안전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처분 시설 내 건설을 배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유치 지역 내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 입지할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18조에서 유치 지역 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동 조항의 명문화로 중 · 저준위 처분 시설의 유치에 관심 있는 지자체 장 및 지역 주민들은 처분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유치 여부를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및 지원 내용 규정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며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유치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동 위원회 설치를 통해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정부의 유치 지역 지원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치 지역 지원 계획에 관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유치 지역 지자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지원 계획에 포함된 소관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계획의 책임있는 집행을 담보하였다.

이러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는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서 각 각 규정하고 있는 특별 지원금과 반입 수

수료의 지원과 함께 별도의 지역 지원 사업(지역 숙원 사업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치 지역이 확정된 후에 지역의 요청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다.

특별법 제8조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약 3,000억원(부지 선정 방식 및 절차 공고시 규정할 예정)의 특별 지원금을 유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여 기존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되던 지원금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원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함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 시설 설치 지역에서 5km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조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의 양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 수수료의 일부를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자가 직접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처분 시설의 운영 기간 중에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에 있어서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관리 사업자와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제17조에서는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를 처분 시설의 실시 계획 승인 후 3년 이내에 유치 지역으로 이전토록 명시함으로써 원전 사업자가 직접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에 기여토록 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처분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제9조에서는 유치 지역 지자체는 특별 지원금과 수수료 중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금액을 재원으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원금이 국고 보조금에서 감액되지 않고 100% 유치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 회계의 관리 및 운영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지역 개발, 관광 진흥, 농수산물 판로 지원,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생활 안정·복리 증진 등으로 한정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지원 사업도 전기 요금 보조, 육영 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 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지원 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후생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였다.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허가 및 매각 조건의 완화를 통해서 유수한 기업, 국가 기관, 연구 기관 등을 유치 지역 내로 유인하는 데 타지역보다 유리한 조건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고 보조금의 보조율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의무 공동 입찰제의 시행 대상 지역을 유치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수급체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 지역 소재 공사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처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상기의 특례 제도를 통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 사업의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별법에 이러한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은 정부가 유치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국가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지역에 대해 보답하고 지역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조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협

중 ·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전 세계적으로 45년 이상, 36개 국가, 70여개 시설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시설로서 정부가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3. 유치 지역 선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투명성 규정

특별법 제7조에서 주민 투표를 유치 지역 선정의 필수 절차로 규정하는 한편, 유치 지역 선정 계획 · 부지 조사 등 부지 선정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여 절차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설명회 및 토론회 실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절차 규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부는 찬반 의사가 평화롭게 표출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내 의사가 결집되는 민주적인 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맺음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분산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다시 자연 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친환경 설비이다.

중 ·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전 세계적으로 45년 이상, 36개 국가, 70여개 시설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시설로서 정부가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그 동안 전력 공급의 혜택을 향유해 온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금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확보된 시설의 안전성 · 지역 지원의 경제성 및 신뢰성 · 부지 선정 절차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 · 사회 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부지 선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추진하여 법에서 위임한 유치 지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계획 및 지원 시행 계획 수립 절차 및 기준, 지원금의 규모 및 지원 시기, 수수료 배분 비율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작성하고, 이후 유치 지역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요청 사항 중 법령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중 · 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산업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중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설치지역"이라 함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 지원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의 5km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지원금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역개발·관광진흥·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또는 환경·안전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업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11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부·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귀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조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금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일시·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해진 후 1년 이내에 토지매수 · 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내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발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중 "발전소업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